

# 통신, 유통, 의료 등 전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제도현황 및 세부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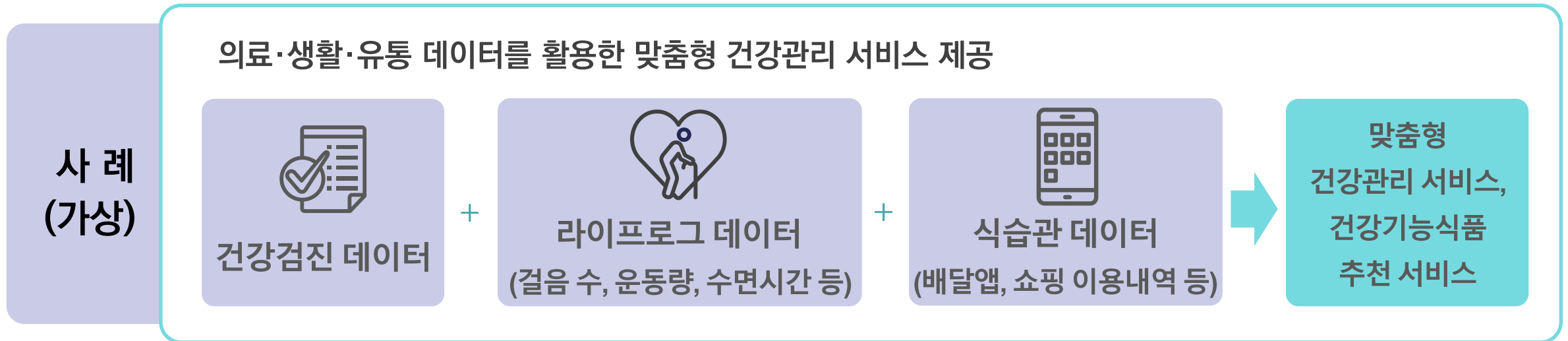
2024. 5. 21.



# 마이데이터 개념

## 마이데이터(MyData) 란?

-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통제권 하에  
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제도로써,  
 개인정보 유출 · 피해방지 등을 넘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 
 발전적 형태의 적극적 프라이버시 권리



# 마이데이터 개념

##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이란?

---

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보편적 권리

'23. 3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도입, 전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근거가 됨

#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해외 입법사례

## 사례① GDPR (EU)

- 제20조(Right to data portability)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부여
  -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로 직접 전송되도록 할 권리 포함

### 이동권 범위

1.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계약에 근거
2. 자동화된 수단으로 처리
3. 정보주체가 제공한 정보 (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 및 온라인상 활동으로 생성한 행태정보 포함)



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 
정보 이동권을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



정보주체로부터 정보이전을 신청 받은 경우,  
정보 이동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



정보 이전 신청 처리  
절차를 마련



제3자와 상호 통용가능하며,  
기계로 판독이 가능한 이전 방법을 마련

-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이거나 정보주체가 제공한 정보인지 검토
- 개인정보의 처리가 다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
-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확인
- 자동화된 수단에 의한 정보처리인지 확인

#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해외 입법사례

## 사례 ② PSD2 (EU)

- 금융 사업 내 지급결제 시장의 활성화와 통합을 통해 데이터 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급결제서비스 지침
- 내용** EU내 국가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지급결제서비스 체계를 통합하고 카드 기반 거래에 대한 교환 수수료 부과에 관한 규칙을 도입, 통합 시장 달성을 목표로 함
- 마이데이터의 직접적 근거 규정은 아니나, 결제시스템 내 계좌정보에 대한 유사 권리를 지원하는 근거로 작용

## 사례 ③ CCPA (미국)




- 「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(CCPA)」에서 개인정보 공개 요구권과 접근 요구권 규정
- 내용** 소비자가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에게 수집대상 정보의 범주, 출처, 수집 목적, 공유 범위, 구체적 항목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본인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

#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국내 입법사례




## 사례 ① 신용정보법 (금융)

- 20년 「신용정보법」 개정,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및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규정(본인신용정보관리업) 신설
- 21년 12월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2년 1월 본격서비스 시작

###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범위

신용정보제공자	제공되는 신용정보	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금융회사, 전자금융업자, 한국거래소, 예탁결제원, 신용정보회사, 채권추심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경영여신업자, 전기통신사업자, 한국전력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공공기관 등</li> </ul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금융거래정보</li> <li>· 국세·지방세 납부정보</li> <li>· 보험료 납부정보</li> <li>· 통신료 납부정보</li> <li>· 기타 주요 거래내역 정보</li> </ul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정보주체 본인</li> <li>· 금융회사</li> <li>· 개인 CB</li> <li>· 마이데이터 사업자</li> </ul>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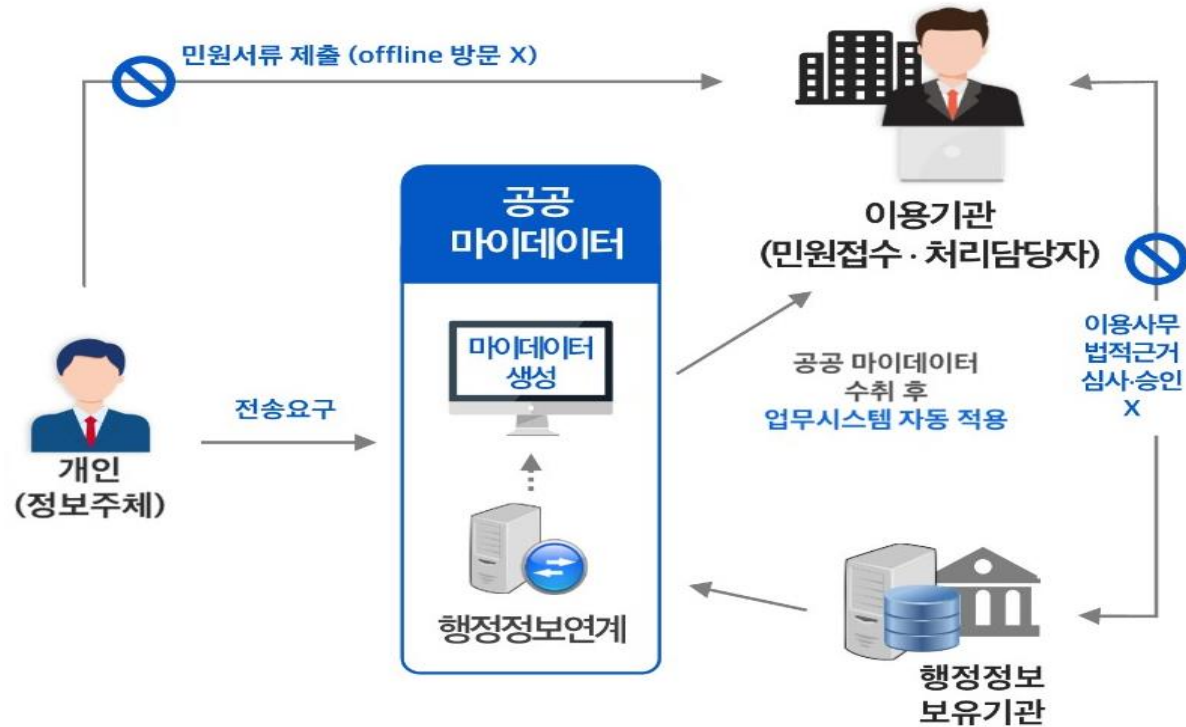
###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업무 범위

고유업무	겸영업무	부수업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</li> </ul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투자 자문·일임업</li> <li>· 전자금융업</li> <li>· 금융상품자문업</li> </ul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데이터 분석·컨설팅</li> <li>·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대리 행사</li> <li>· 정보계좌 제공</li> <li>· 기타 신용정보주체 및 신용질서 저해 우려 없는 업무(금융상품 광고·홍보, 본인인증 등)</li> </ul> 

#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국내 입법사례

## 사례 2 전자정부법(공공)

- 20년 「전자정부법」 개정을 통해 본인행정정보 전송요구권 도입, 2021년 12월 정식서비스 시행 (제43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)



# 경과사항

16년~18년

'16년 K-MyData 추진계획을 통해 마이데이터가 제시된 이후,  
'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국내 법제도에 반영

20년~21년

신용정보법('20.8월 시행), 전자정부법('21.12월 시행) 개정을  
통해 금융·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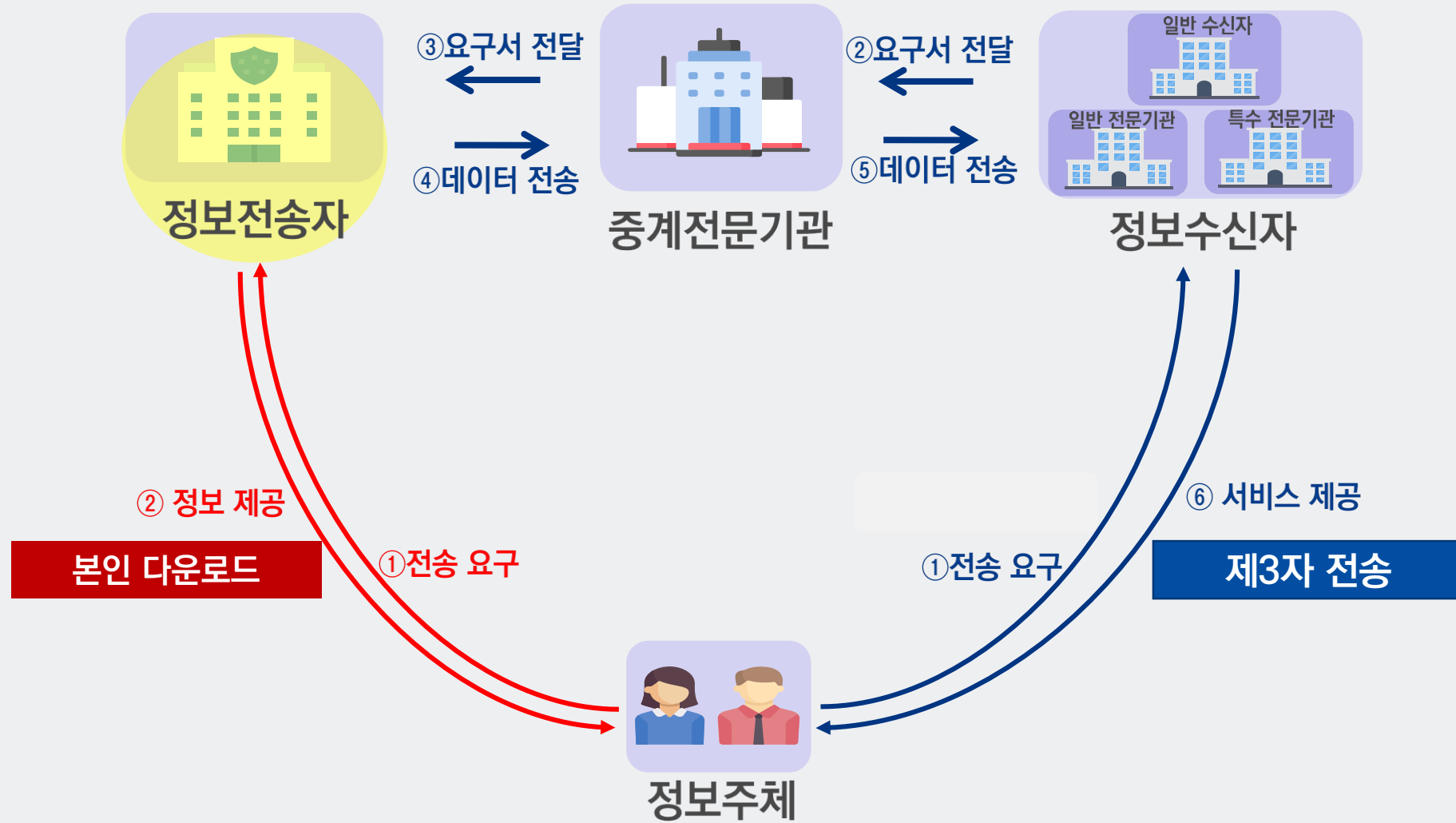
23년~현재

개인정보보호법 개정('23.3월)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보편적  
권리로 도입되어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근거가 마련됨

\* '24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중이며, '25. 3월 시행예정



#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체계(정보전송자)



※ 법·제도 등 변경 상황에 따라 전송요구 체계는 변동 될 수 있음.

# 정보전송자

## ▣ 전송요구권 제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

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와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로 구분

###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

- ▣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10만명 이상 정보주체 보유자
- ▣ 그 밖의 기관·법인·단체 중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를 보유한 자
- ▣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
- ▣ 그 외 고시에서 정한 자

###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

- ▣ 산업 분야별로 대상 기준 마련
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**의료,통신,유통\*** 분야에서 3자 대상 정보전송자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예정
- \* '23년 발표된 국가 마이데이터 추진 전략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분야는 우선추진분야부터 시작하여 점진적·단계적으로 전분야로 확대 예정

※ 법·제도 등 변경 상황에 따라 정보전송자 기준은 변동 될 수 있음

# 정보전송자

## ▣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

### 의료

「의료법」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및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### 통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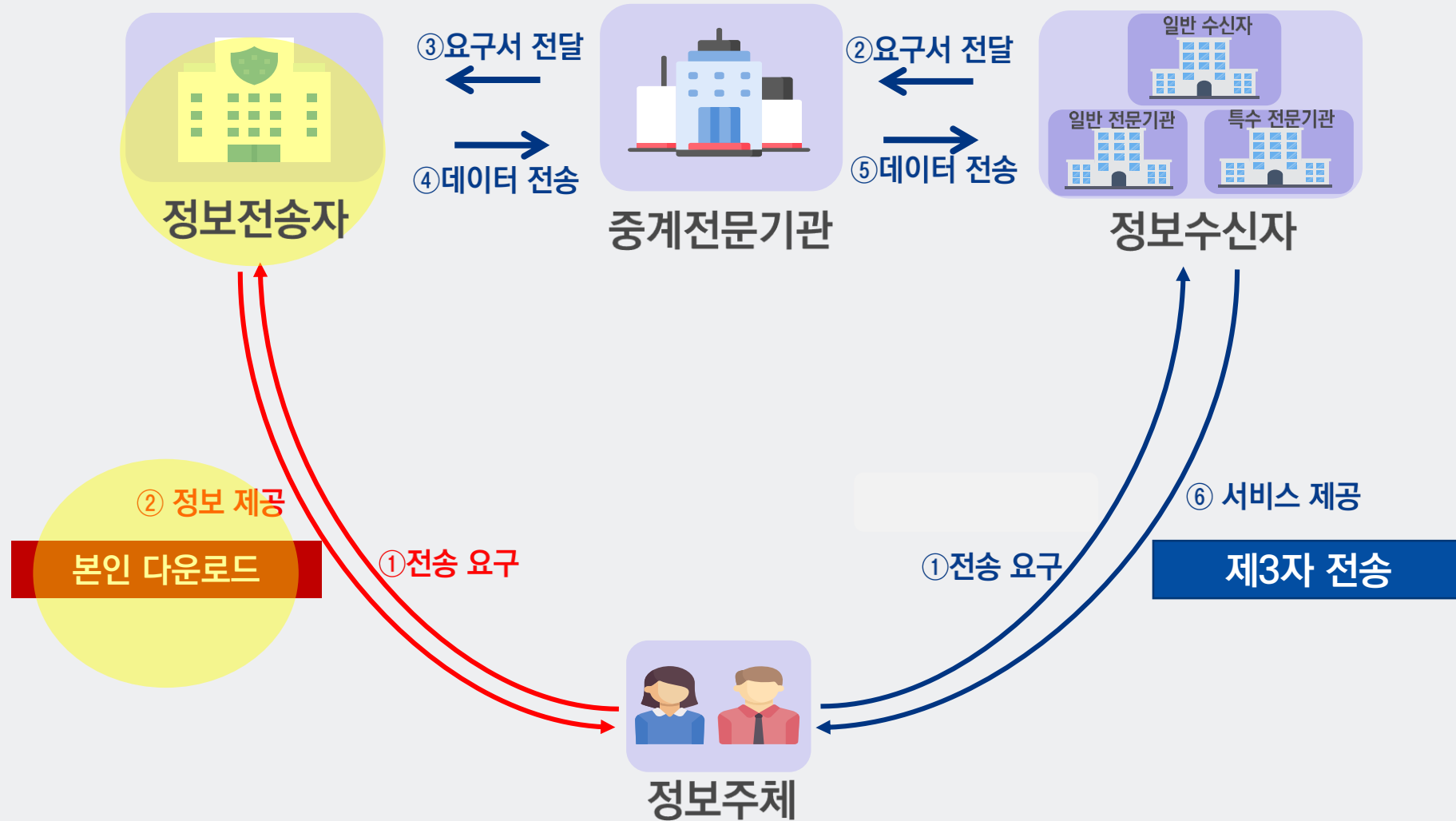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제공자 중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### 유통
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통신판매업자/중개업자 중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 또는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 저장·관리하는자

※ 법·제도 등 변경 상황에 따라 정보전송자 기준은 변동 될 수 있음

# 전송요구권 체계 (본인대상 전송정보)



※ 법·제도 등 변경 상황에 따라 전송요구권 체계는 변동 될 수 있음

# 본인대상 전송요구 정보의 범위

**전송요구 정보** 정보주체 본인의 정보로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

- ▣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
- ▣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
- ▣ 법률규정, 의무준수를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전송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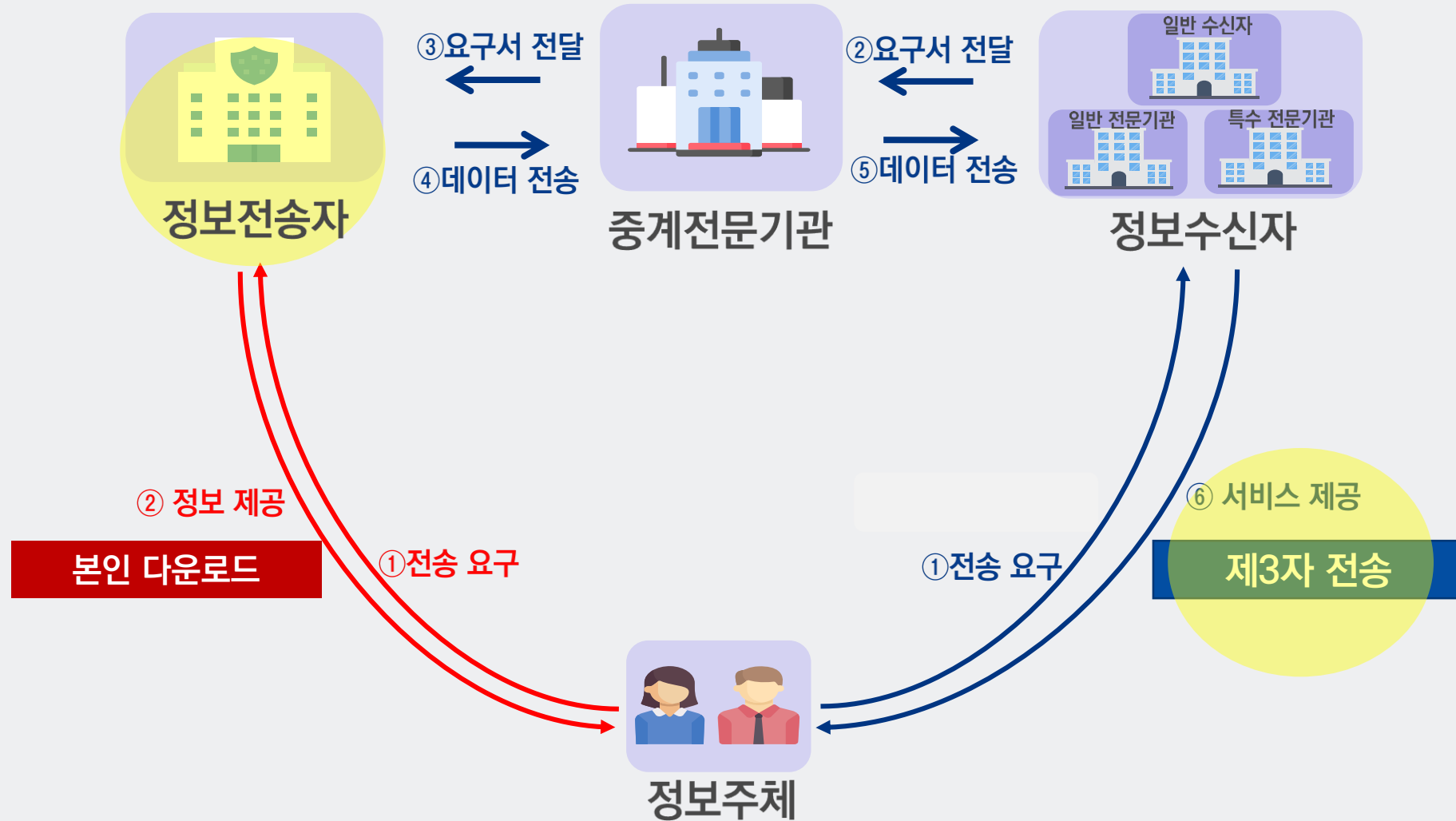
# 본인대상 전송요구 정보의 범위

## 제외 기준

- ▣ 정보의 전송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- ▣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
- ▣ 전송시 본인대상 정보전송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 본인대상 정보전송자의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보
- ▣ 본인대상 정보전송자가 시스템 내부 관리 목적으로 보유하는 개인정보 등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보

※ 법·제도 등 변경 상황에 따라 본인대상 전송요구 정보의 범위 제외기준은 변동 될 수 있음

# 전송요구권 체계 (제3자 제공 전송요구 정보)



※ 법·제도 등 변경 상황에 따라 전송요구권 체계는 변동 될 수 있음

# 제3자 전송요구 정보의 범위

## 의료

진단내역, 처방내역, 검체·영상·병리검사 결과 등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환자진료 등과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 
처방약품명과 일수,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등 약사법 제30조에 따라 조제 등과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

## 통신

기간통신서비스 가입정보, 이용정보, 청구정보, 납부정보 등 기간통신역무 정보로서 고시하는 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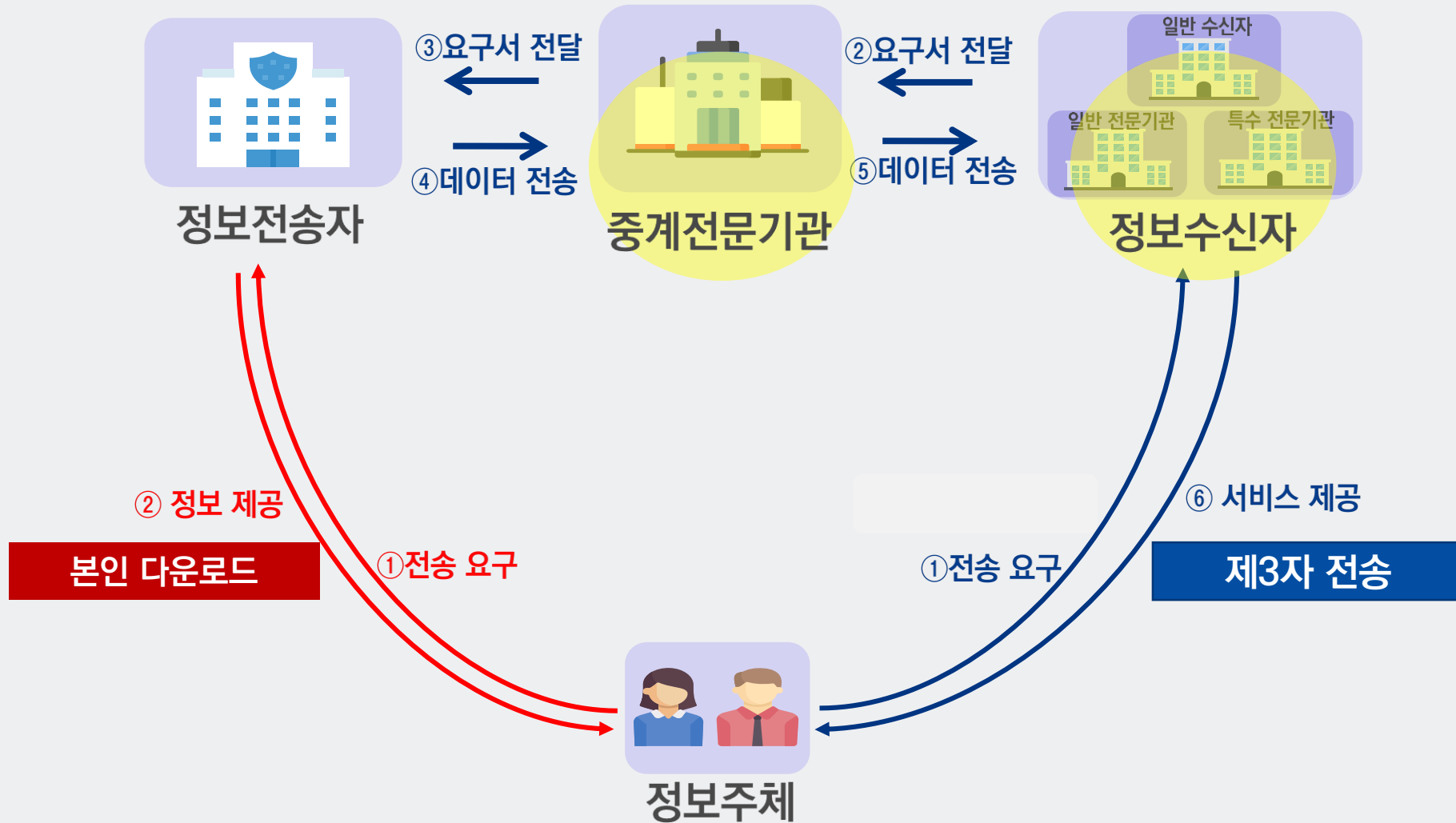
## 유통

주문정보, 구매정보, 이용정보 등 상품서비스를 거래하거나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처리하는 정보로서 고시하는 정보

※ 법·제도 등 변경 상황에 따라 제3자 전송요구 정보의 범위는 변동 될 수 있음



# 전송요구권 체계 (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)



※ 법·제도 등 변경 상황에 따라 전송요구권 체계는 변동 될 수 있음

# 일반수신자 ·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

▣ 전송요구권 제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신하는 자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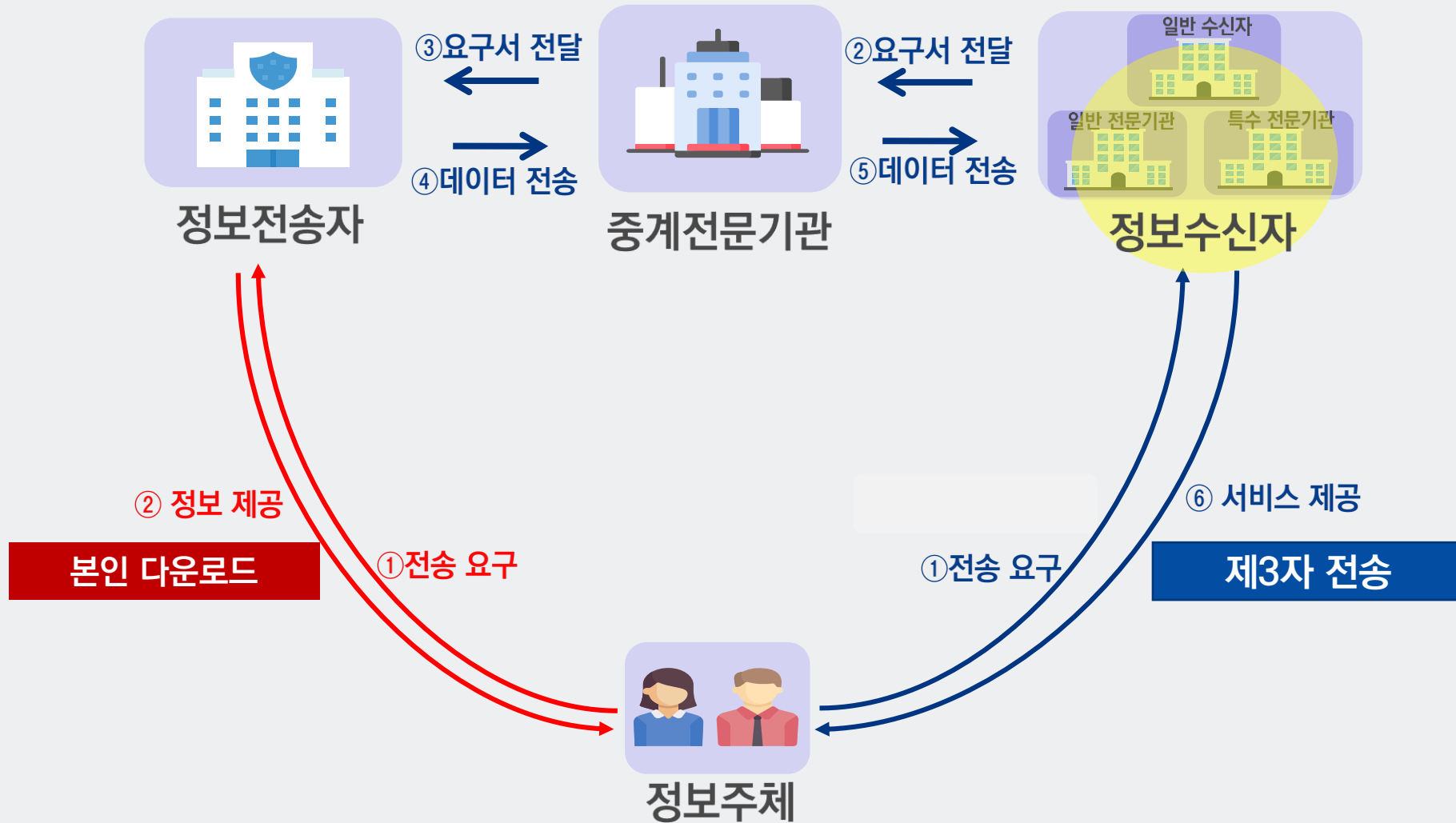
일반수신자와 개인정보 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

일반 수신자	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	
	일반전문기관(의료 외)	특수전문기관(의료)
<p>▣ 정보를 단순 확인 목적으로 전송받는 자</p> <p>☞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 필요</p>	<p>▣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 받은 <b>개인 정보(의료 분야 제외)</b>를 관리·분석하여 <b>통합조회, 맞춤형 서비스, 연구, 교육 등의 업무</b>를 수행하는자로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</p>	<p>▣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<b>의료 분야 데이터</b>를 관리·분석하여 <b>통합조회, 맞춤형 서비스, 연구, 교육 등의 업무</b>를 수행하는자로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</p>
		중계전문기관
		<p>▣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기능을 제공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</p> <p><b>* 일반수신자, 일반전문기관, 특수전문기관 업무 겸업 불가</b></p>

## 정보수신자

※ 법·제도 등 변경 상황에 따라 정보수신자 및 중계전문기관 기준은 변동 될 수 있음

# 전송요구권 체계 (정보수신자)



※ 법·제도 등 변경 상황에 따라 전송요구권 체계는 변동 될 수 있음

#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

##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(일반, 특수)

**(기술수준 및 전문성)**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, 개인정보 관리 계획의 적정성,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적정성

**(안전성 확보조치)** 안전조치의무 이행,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 기관 운영을 위한 보호체계의 적정성

**(재정능력)**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안전성, 자본금 1억 이상, 10억 이상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

※ 법·제도 등 변경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은 변동 될 수 있음

# 일반전문기관 금지행위

## ▣ 개인정보 침해 또는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구체화하여 규정

-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
-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 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·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 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- 정보주체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
-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거나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요구한 전송 요구 대상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
-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
-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과도하게 접근하여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
-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수수료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
-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
- 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 요구를 즉시 변경, 철회하지 않는 행위
-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약금 등 금전적·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
-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
-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적법한 처리근거 없이 전송받은 목적 외로 처리하는 행위
- 전송 요구 목적 달성 이후에도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
-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
-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개발 및 주요기능 변경 시 서비스 기능 등에 대해 적합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, 서비스 보안성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
- 그 밖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전송요구권 생태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

※ 법·제도 등 변경 상황에 따라 일반전문기관 금지행위는 변동 될 수 있음

# 특수전문기관 금지행위

## ▣ 개인정보 침해 또는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구체화하여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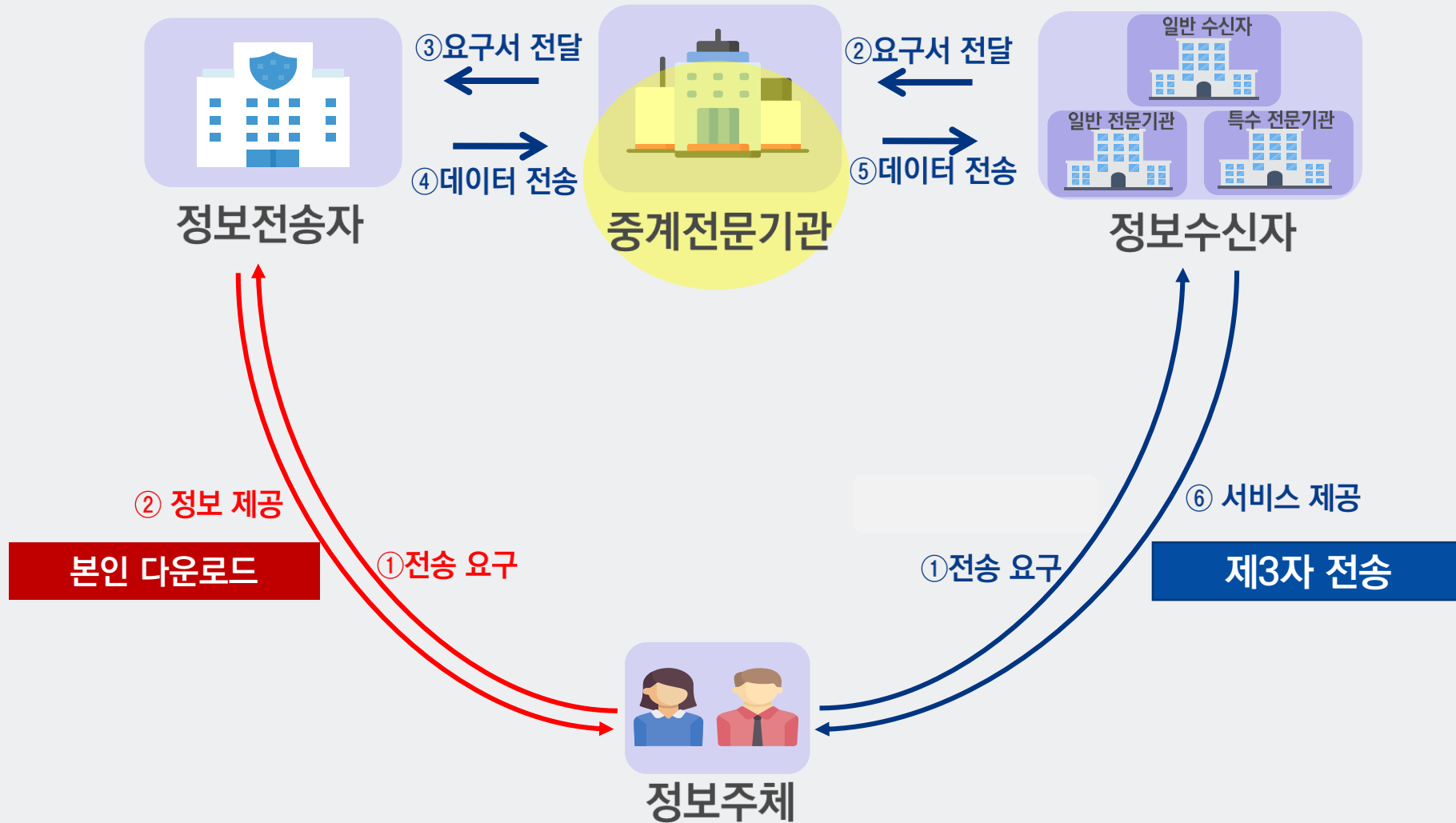
- 일반전문기관 금지행위 (공통)



- 금전적 이익 등을 조건으로 정보주체의 전송 동의를 유도하는 행위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질환자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애인, 「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, 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등을 차별하는 행위
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제1항 및 제2항, 제50조에 따라 금지 및 제한된 행위
- 그 밖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전송요구권 생태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

※ 법·제도 등 변경 상황에 따라 특수전문기관 금지행위는 변동 될 수 있음

# 전송요구권 체계 (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-중계)



※ 법·제도 등 변경 상황에 따라 전송요구권 체계는 변동 될 수 있음

# 중계 전문기관 지정요건

## 중계 전문기관

**(기술수준 및 전문성)**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, 개인정보 관리 계획의 적정성,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적정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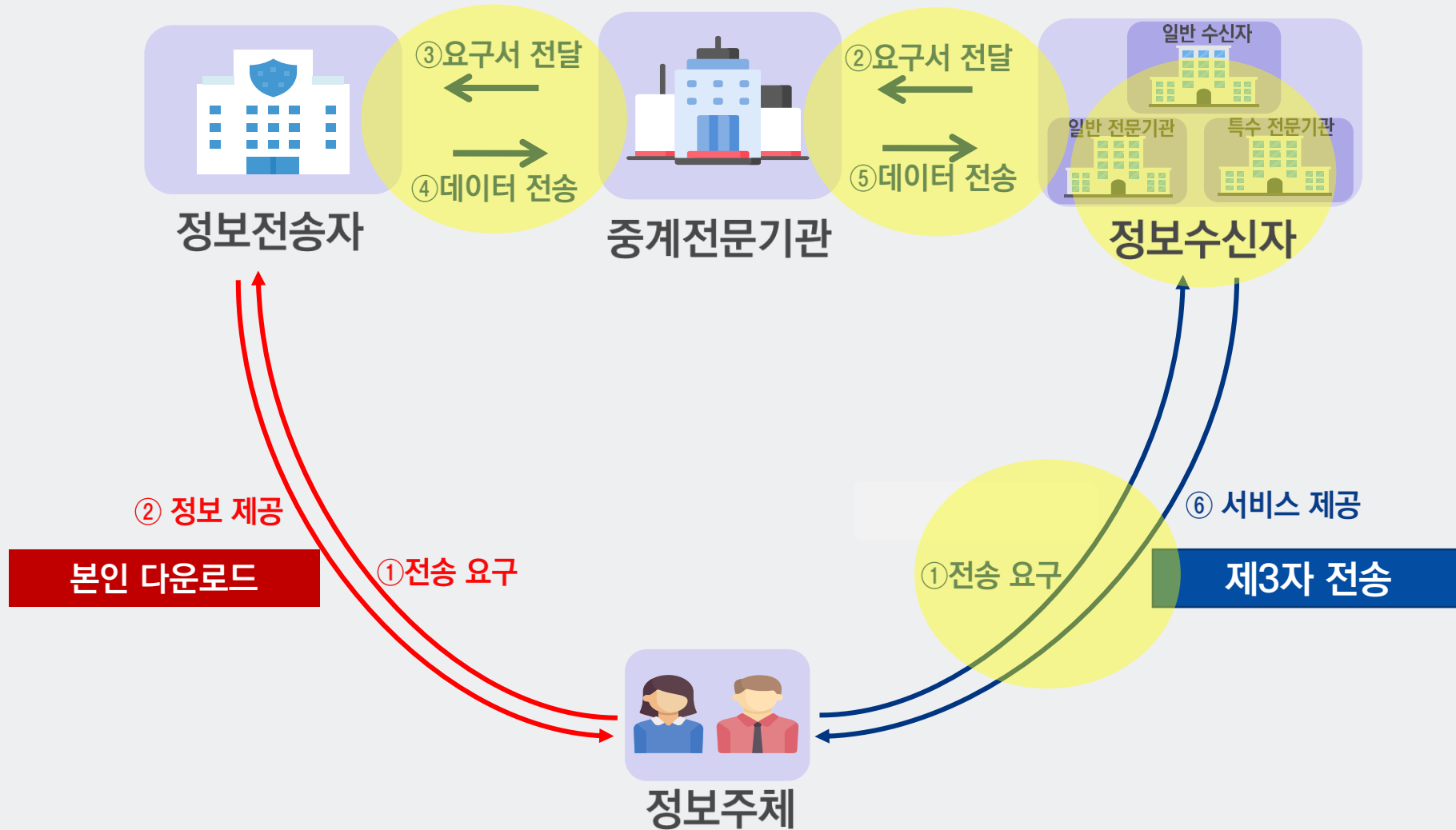
**(안전성 확보조치)** 안전조치의무 이행,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 기관 운영을 위한 보호체계의 적정성

**(재정능력)**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안전성, 자본금 10억원 이상, 10억원 이상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

※ 법·제도 등 변경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은 변동 될 수 있음



# 전송요구권 체계 (전송요구 방법)



※ 법·제도 등 변경 상황에 따라 전송요구권 체계는 변동 될 수 있음

# 전송요구 방법

- ▣ 정보주체는 전송요구 목적, 전송받는 자 등을 특정하여 전송을 요구하고, 정보수신자를 통한 전송요구 및 정기적 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
    - 정보수신자는 정보주체가 전송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    - 정보전송자는 거절·중단 사유\*가 없는 한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지체없이 개인정보 전송,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 전송
- \*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제3자 기망·협박에 의한 전송요구로 의심되는 경우,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, 열람 제한·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

※ 법·제도 등 변경 상황에 따라 전송요구 방법은 변동 될 수 있음

#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준비

##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환경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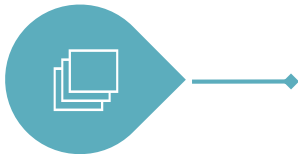
### 이동대상 데이터 구체화

산업별·업종별로 이동가능한 데이터 항목·내용 구체화 및 공개



### 데이터 표준화

전문가 및 산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이동대상이 되는 데이터 항목별로 표준 등 마련



### 전송방식 규격화

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송·수신을 위해 사전에 표준화된 정보제공방식 설계·제공



## 데이터 이동의 안전성 강화

### 통합인증

정보보호·보안상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한 통합 본인인증 절차 마련



### 식별방안

개인과 기관,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전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용 식별방안 정립



### 보안 인프라

전송과정 암호화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마련 및 보급



※ 법·제도 등 변경 상황에 따라 전송요구 세부기술 적용방식은 변동 될 수 있음



감사합니다.